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연구실사고로 인한 심리상담·심리치료에 대한
근거 마련 등〉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69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연구실사고로 인한 심리상담·심리치료에 대한 근거 마련 등(안 제27조의2 신설) ...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6. 16.

다. 회부연월일 : 2025. 6.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으로 사고에 대한 보고·조사와 이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등 조치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연구실사고로 인한 심리상담·심리치료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안 제27조의2 신설)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연구실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가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①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의 기준 등은 과학기술

현 행	개 정 안
	<u>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u> <u>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연구실사고¹⁾에 대해 연구활동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및 연구실 시설·장비 훼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연구실사고 발생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현행법 제2조제12호는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연구실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음.

○ 현행법 제26조²⁾는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활동종사

망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실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연구실사고 중 인적사고의 발생 현황 및 피해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사고건수 1,115건 중 655건에 대해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고, 이는 모두 신체적 피해에 해당하며, 주로 보험(12억 34백만원)을 통해 지원되었음.

○ 최근 3년간 연구실사고의 인적 피해(신체적 피해) 지원 현황을 보면, 보험으로 지원된 금액이 12억 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자체 지원금이 1억 100만원, 둘 다 지원 받은 복합 지원금이 7,500만원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현황은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구분 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신적 피해 지원액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없고, 다만, 현재 95% 이상의 대학교에서 가입한 교육시설안전원 보험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정신적 피해 보험지원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표] 최근 3년간 연구실사고의 인적 피해 발생 및 피해 지원 현황

연도	인적피해 보상건수 (총 사고건수)	신체적 피해 지원				정신적 피해 지원		
		보험 (지원액)	기관 자체 (지원액)	복합 (지원액)	기타	보험지원	기관 자체	기타
2022	242건 (327건)	175건 (423백만원)	38건 (32백만원)	9건 (24백만원)	20건 (-)	(-)	(-)	(-)
2023	247건 (394건)	163건 (622백만원)	52건 (57백만원)	6건 (28백만원)	26건 (-)	(-)	(-)	(-)
2024	166건 (394건)	99건 (189백만원)	51건 (13백만원)	3건 (23백만원)	13건 (-)	(-)	(-)	(-)
합계	655건 (1,115건)	437건 (1,234백만원)	141건 (101백만원)	18건 (75백만원)	59건 (-)	(-)	(-)	(-)

주1: “인적피해 보상건수”는 연구실사고 발생 후, 보상 등 후속조치가 완료·보고된 사고 건수 기준임.

주2: “보험”을 통한 지원은 연구실안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을 통해 지원이 완료된 건수임.

주3: “복합”은 1건의 사고에 대해 보험지원과 연구주체의 장 지원 등이 복합 보상된 건수임.

주4: “기타”는 연구실사고 피해자(개인)가 개인 보험 등으로 치료비를 자부담 처리한 경우로써, 비용은 별도 집계되지 않은 것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은 현재 신체적 피해를 중심으로 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연구실사고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치유,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법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험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별도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

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서 법체계상 현행 법에서 신체적 피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 제2조제12호 “연구 실사고”의 정의 및 제26조 보험가입 등에 관한 조문에 정신적 피해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공감하나, 해당 분야 전문성이 없는 과기정통부가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등을 지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기 보다는 현행 제도상 운영되는 사항을 법률 개정안에 잘 반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수정동의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6